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서	기관의장
람	



제 634호 2019. 5. 2.(목)

고 시

공 고

ə) 크).					
회 람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860-3045, 행정 3045)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9 - 51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제23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지방자치법」제13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3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고시 제 2019-51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제23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지방자치법」제13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4. 23.

남 해 군 수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고
합 계	522,498,426	511,749,954	10,748,472	
일 반 회 계	426,864,857	413,397,376	13,467,481	
특 별 회 계	95,633,569	98,352,578	△2,719,009	
상수도특별회계	16,702,940	15,373,697	1,329,243	
청사건립특별회계	52,207,373	52, 157, 373	50,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54,914	883,478	71,436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125,820	2,021,319	104,50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75,587	666,728	8,859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22,966,935	27,249,983	△4,283,048	

□ 세입예산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ㅁ모
합 계	426,864,857	413,397,376	13,467,481	
지 방 세 수 입	14,405,300	14,405,300	1	
지방세	14,405,300	14,405,300	1	
세 외 수 입	10,926,489	10,864,515	61,974	
경상적세외수입	6,197,648	6,186,173	11,475	
임시적세외수입	4,728,841	4,678,342	50,499	
지방교부세	181,624,000	168,280,000	13,344,000	
조정교부금등	14,360,000	14,360,000	J	
보조금	154,041,989	157,262,076	△3,220,087	
국고보조금등	125,525,742	128,445,990	△2,920,248	
도비보조금등	28,516,247	28,816,086	△299,83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507,079	48,225,485	3,281,594	
보전수입등	50,088,742	46,807,148	3,281,594	
내부거래	1,418,337	1,418,337	_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고
합 계	95,633,569	98,352,578	△2,719,009	
지방세			1	
세외수입	4, 143, 153	4,046,083	97,070	
경상적세외수입	4,015,083	3,915,083	100,000	
임시적세외수입	128,070	131,000	△2,930	
지방교부세			I	
보조금	14,207,467	14,728,979	△521,512	
국고보조금등	12,567,759	12,971,800	△404,041	
도비보조금등	1,639,708	1,757,179	△117,47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7,282,949	79,577,516	△2,294,567	
보전수입등	3,879,540	3,467,246	412,294	
내부거래	73,403,409	76,110,270	△2,706,861	

□ 세출예산

○ 일반회계(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미고
	합	Э			426,864,857	413,397,376	13,467,481	
인		건		П	56,798,866	56,556,213	242,653	
뮝		건		Ы	27,140,050	26,715,789	424,261	
경	상	(01		129,113,470	126,695,075	2,418,395	
자	본	9	XI	字	165,038,007	149,353,015	15,684,992	
භි	자	및	출	자			1	
보	전	,	재				1	
내	부		거 2		33,156,618	35,863,479	△2,706,861	
Й	HI HI	및	기	타	15,617,846	18,213,805	△2,595,959	

○ 특별회계(성질별)

(단위 : 천원)

									(5)
	구		분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고
	합		계			95,633,569	98,352,578	△2,719,009	
인		건			비	3,411,207	3,420,050	△8,843	
물		건			비	5,631,407	5,732,827	△101,420	
경	상		01		전	4,823,912	6,991,981	△2,168,069	
자	본		지		출	27,137,306	27,749,100	△611,794	
භි	자	및		출	자			_	
보	전		재		원	1,137,476	1,030,694	106,782	
내	부	-	거		래	53,352,926	53,402,926	△50,000	
예	HI E	1	및	기	타	139,335	25,000	114,335	

남해군 고시 제2019 - 54호

남해군관리계획(대지포온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남해군관리계획(대지포온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5월 2일

남 해 군 수

- 1. 위 치: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41번지 일원
- 2. 규 모: 지구단위계획구역 39,388㎡ 도로(중로3-10호선) - B=12m, L=556.5m, A=10,472㎡
- 3. 남해군관리계획(대지포온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붙임 참조
- 4. 관계도면: 실음생략

<붙임>

남해군관리계획(대지포온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가.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내용	면적 (m²)	최 초 결정일	비고
신설	15	대지포온천 개발진흥지구	관광 ·휴양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4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	39,388	-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5	대지포온천 개발진흥지 구	신설 (A = 39,388 m²)	○ 지난 2005년 11월 14일 경상남도 고시 제 2005-328호로 지정된 대지포 온천원보호지구 내 「온천법」 제10조에 따라 온천개발계획 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금회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함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구역명	구역의	구역의 위 치		면적(m²)	최 초	비고	
시번호	746	세 분	T 7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1177
18	대지포온천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41번지 일원	-	39,388	39,388	-	신설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8	대지포온천 지구단위 계획구역	신설 (A = 39,388 m²)	○ 지난 2005년 11월 14일 경상남도 고시 제 2005-328호로 지정된 대지포 온천원보호지구내 「온천법」 제10조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을 수 립하고,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금회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 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1) 공간시설

구분	도면표	시설명	시설의	변적(m²		면적(m²)		최 초	비고
ार	시번호	기원경	종 류	71/1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1114
신설	1	녹지	경관녹지	삼동면 물건리 산241-7번지 일원	-	944	944	-	
신설	2	녹지	경관녹지	삼동면 물건리 845-4번지 일원	-	3,618	3,618	-	
신설	3	녹지	경관녹지	삼동면 물건리 산241-26번지 일원	-	644	644	-	
신설	4	녹지	경관녹지	삼동면 물건리 산241번지 일원	-	1,734	1,734	-	
신설	5	녹지	경관녹지	삼동면 물건리 845-1번지 일원	-	281	281	-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녹지	신설 (A=944m²)	
2	녹지	신설 (A=3,618m²)	 ○ 온천개발에 따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3	녹지	신설 (A=644m²)	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부에 경관녹지를
4	녹지	신설 (A=1,734m²)	계획하였음
5	녹지	신설 (A=281 m²)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관광휴양시설용지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번호 (m²)		획지번호	위치	면적(m²)	H -1/-	
			I -1	삼동면 물건리 산241-11번지 일원	5,020		
			I -2	삼동면 물건리 845-4번지 일원	5,405	스바치서	
		I 23,918	I -3	삼동면 물건리 산241-26번지 일원	5,936	숙박시설	
			I -4	삼동면 물건리 산241번지 일원	4,525		
-	I		I -5	삼동면 물건리 857-1번지 일원	1,421	SPA	
			I -6	삼동면 물건리 산241번지 일원	420	 상가 및	
			I -7	삼동면 물건리 산241-10번지 일원	423	카페	
			I -8	삼동면 물건리 산241-1번지 일원	768	판매 및 관리	

2) 공공시설용지

도면 가구 면적					비고		
번호	번호 번호 (m²)		획지번호	위치	면적(m²)	H)-14	
				∏-1	삼동면 물건리 산241번지 일원	2,621	도로
-	П	3,250	П-2	삼동면 물건리 843-2번지 일원	629	환경오염 방지시설	

3) 녹지용지

1		-1-1		획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m²)	획지번호	기번호 위치 면적(m')		비고	
		Ⅲ 12,220	∭-1	삼동면 물건리 산241번지 일원	4,295	 공원	
			Ⅲ-2	삼동면 물건리 산241-3번지 일원	704	7 E	
			Ⅲ-3	삼동면 물건리 산241-7번지 일원	944		
-	Ш		Ⅲ-4	삼동면 물건리 845-4번지 일원	3,618		
			Ⅲ-5	삼동면 물건리 산241-26번지 일원	644	경관녹지	
			Ш-6	삼동면 물건리 848번지 일원	1,734		
			Ⅲ-7	삼동면 물건리 846번지 일원	281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관광휴양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	구 분	계획내용
		go 1	지정용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9에 따른 숙박시설지구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I-1 ~ 3	도	권장용도	○ 휴양콘도미니엄
_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60% 이하
		-	높 이	○ 5층 이하
		1	배치	○ 도면참조
		<u>a</u> o	지정용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9에 따른 숙박시설지구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I-4	도	권장용도	○ 휴양콘도미니엄
_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60% 이하
		높 이		○ 7층 이하
		배치		○ 도면참조
		용	지정용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9에 따른 휴양·문화시설 지구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도	권장용도	○ 스파 및 사우나시설
_	I -5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60% 이하
		3	높 이	○ 4층 이하
		ا	배 치	○ 도면참조
-	I -6, 7 용 도 지정		지정용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9에 따른 상가시설지구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 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7호 판매시설

			1			
			권장용도	○ 상가 및 카페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7	건폐율	○ 30% 이하		
		_	용적률	○ 16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1	배 치	○ 도면참조		
		여 나	지정용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9에 따른 공공편익시설지 구 및 상가시설지구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 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7호 판매시설		
			권장용도	○ 판매 및 관리시설		
-	I - 8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7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60% 이하		
		1	높 이	○ 5층 이하		
		1	배 치	○ 도면참조		

2) 공공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지정용도	○ 도로
		용 도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	Ⅱ-1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배치	○ 도면참조
			지정용도	○ 저류지
		용 도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	П-2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배치	○ 도면참조

3) 녹지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지정용도	○ 공원(오수처리시설, 저류지 지하매설)
		용 도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	Ⅲ-1, 2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배 치		○ 도면참조
		용	지정용도	○ 경관녹지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_	Ⅲ- 3 ~ 7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배 치	○ 도면참조

5.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규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기능	(m)	기점	중점	• -	경과지		
신설	중로	3	10	12	국지 도로	556.5	삼동면 물건리 900-3 일원	삼동면 물건리 1080 일원	일반 도로	-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지난 2005년 11월 14일 경상남도 고시
		○ 신설	제2005-328호로 지정된 대지포 온천원보
	중로3-10호선	- B = 12m	호지구내 「온천법」 제10조에 따라 온
-	3年3-10年位	- L = 556.5m	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10조
		- A = 10,472m² 의2에 따라 금회 진입도로를 군겨	
			설 도로로 결정하고자 함

남해군 고시 제2019 - 56호

남해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남해군계획시설(공원, 도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

남해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5월 2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위치

ㅇ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공간시설:공원)

ㅇ 명 칭 : 남해힐링빌리지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교통시설(도로) 5,994m² - 공간시설(공원:소공원) 301m²

ㅇ 규 모

	マ	ㅂ	합 계		공간시설(공원)			
	丁	분	법 계	중로 2-6	소로 2-127	소로 2-128	소로 3-49	소공원
Ī	면	적(m²)	6,295.0	2,376.0	1,258.0	2,179.0	181.0	301.0

※ 우선 시행분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남해군수(담당부서:관광진흥담당관실)

ㅇ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망운로9번길 12

5. 사업기간

ㅇ 착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0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1 참조

7. 관계도면 : 실음생략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4)에 비치】

[붙임1] 수용 또는 시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1. 토지조서(총괄)
- 가. 전체 토지 편입조서

구 분	합	계	국 위	우 지	공수	유 지	사 f	비고	
) L	필지수	면 적(m²)	필지수	면 적(m³)	필지수	면 적(m')	필 지 수	면 적(m³)	n -r
합계	28	6,295.0	_	_	27	6,260.0	1	35.0	
임	2	164.0	_	_	2	164.0	-	_	
도	6	363.0	_	_	5	328.0	1	35.0	
전	20	5,768.0	_	_	20	5,768.0	_	_	

나. 도시계획시설별 토지 편입조서

■교통시설 : 도로

구 분	합	계	국 위	우 지	공식	우 지	사 위	비고	
一十七	필지수	면 적(m²)	필지수	지수 면적(㎡) 된		면 적(m³)	필지수 면 적(m')		n) -12
합계	28	5,994.0	_	_	27	5,959.0	1	35.0	
임	2	164.0	_	_	2	164.0	-	-	
도	6	363.0	_	_	5	328.0	1	35.0	
전	20	5,647.0	_	_	20	5,467.0	_	_	

■공간시설 : 공원(소공원)

7 13	합	계	국 년	유 지	공 년	우 지	사 f	유 지	ען די	
구 분	필지수	면 적(m')	국 유 지 필 지 수 면 적(1 	면 적(m')	필지수	면 적(m')	필지수	면 적(m')	비고	
합계	1	301.0	_	_	1	301.0	_	_		
임	_	_	1	_	_	_	_	_	_	
도	_	_	_	_	_	_	_	_	_	
전	1	301.0	_	_	1	301.0	_	_		

2. 지목별 토지조서

가. 전체 지목별 편입조서

구 분	필지 수(개소)	편입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28	6,295.0	100.00	
임	2	164.0	2.60	
도	6	363.0	5.77	
전	20	5,768.0	91.63	

나. 도시계획시설별 토지 편입조서

■교통시설 : 도로

구 분	필지 수(개소)	편입면적(m')	구성비(%)	비고
합계	28	5,994.0	100.00	
임	2	164.0	2.73	
도	6	363.0	6.06	
전	20	5,467.0	91.21	

■공간시설 : 공원(소공원)

구 분	필지 수(개소)	편입면적(m')	구성비(%)	비고
합계	1	301.0	100.00	
임	_	_	_	
도	_	_	_	
전	1	301.0	100.00	

3. 소유자별 토지조서

가. 전체 토지 편입조서

구 분	필지 수(개소)	편입면적(m²)	구성비(%)	비고
합계	28	6,295.0	100.00	
국유지	_	_	_	_
공유지	27	6,260.0	99.40	남해군
사유지	1	35.0	0.60	김다줄

나. 도시계획시설별 토지 편입조서

■교통시설 : 도로

구 분	필지 수(개소)	편입면적(m²)	구성비(%)	비고
합계	28	6,260.0	100.00	
국유지	-	_	_	_
공유지	27	6,225.0	99.40	남해군
사유지	1	35.0	0.60	김다줄

■공간시설 : 공원(소공원)

구 분	필지 수(개소)	편입면적(m')	구성비(%)	비고
합계	1	6,260.0	100.00	
국유지	_	_	_	-
공유지	1	301.0	100.00	남해군
사유지	_	_	-	-

4. 세부토지조서

구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m')	편입면적(m²)	소유자	비고	
	1	창선면 진동리	산204-1	임	439	132	공유지	남해군	
	2	창선면 진동리	668	임	876	32	공유지	남해군	
		소기	1		_	164	_	_	
	1	창선면 진동리	641-1	도	175	35	사유지	김다줄	
	2	창선면 진동리	641-3	도	106	92	공유지	남해군	
	3	창선면 진동리	644 - 1	도	3	3	공유지	남해군	
	4	창선면 진동리	645 - 1	도	20	20	공유지	남해군	
	5	창선면 진동리	647-3	도	1312	174	공유지	남해군	
	6	창선면 진동리	산204-8	도	57	39	공유지	남해군	
		소기	4)		_	363	_	-	
	1	창선면 진동리	640	전	1177	71	공유지	남해군	
	2	창선면 진동리	641	전	2301	1011	공유지	남해군	
	3	창선면 진동리	642	전	2334	547	공유지	남해군	
	4	창선면 진동리	644	전	870	151	공유지	남해군	
	5	창선면 진동리	645	전	344	344	공유지	남해군	
교통 시설	6	창선면 진동리	651	전	909	6	공유지	남해군	
(도로)	7	창선면 진동리	652	전	1779	255	공유지	남해군	
	8	창선면 진동리	653	전	1633	479	공유지	남해군	
	9	창선면 진동리	657	전	813	232	공유지	남해군	
	10	창선면 진동리	658	전	1825	263	공유지	남해군	
	11	창선면 진동리	661	전	621	170	공유지	남해군	
	12	창선면 진동리	663	전	621	28	공유지	남해군	
	13	창선면 진동리	664	전	1950	295	공유지	남해군	
	14	창선면 진동리	665	전	783	403	공유지	남해군	
	15	창선면 진동리	666	전	1521	291	공유지	남해군	
	16	창선면 진동리	667	전	1937	618	공유지	남해군	
	17	창선면 진동리	669	전	1745	163	공유지	남해군	
	18	창선면 진동리	673	전	852	100	공유지	남해군	
	19	창선면 진동리	674	전	466	26	공유지	남해군	
	20	창선면 진동리	661-1	전	57	14	공유지	남해군	
		소기	1		_	5,467	_	_	
	교통시설(도로) 편입 토		편입 토지 소	:계	_	5,994			
공간시설	1	창선면 진동리	653	전	1,633	301	공유지	남해군	
(공원)	공간시설(공원) 편입토지 소		계	-	301	-	_		
					_	6,295	_	_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면적	(m²)	소유	우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 외권리
1	창선면 진동리	산204- 1	임	439	132		남해군		남해군	
2	창선면 진동리	668	임	876	32		남해군		남해군	
3	창선면 진동리	641-1	도	175	35		김다줄		김다줄	
4	창선면 진동리	641-3	도	106	92		남해군		남해군	
5	창선면 진동리	644-1	도	3	3		남해군		남해군	
6	창선면 진동리	645-1	도	20	20		남해군		남해군	
5	창선면 진동리	647-3	도	1312	174		남해군		남해군	
7	창선면 진동리	산204- 8	도	57	39		남해군		남해군	
8	창선면 진동리	640	전	1177	71		남해군		남해군	
9	창선면 진동리	641	전	2301	1011		남해군		남해군	
10	창선면 진동리	642	전	2334	547		남해군		남해군	
11	창선면 진동리	644	전	870	151		남해군		남해군	
12	창선면 진동리	645	전	344	344		남해군		남해군	
13	창선면 진동리	651	전	909	6		남해군		남해군	
14	창선면 진동리	652	전	1779	255		남해군		남해군	
15	창선면 진동리	653	전	1633	780		남해군		남해군	
16	창선면 진동리	657	전	813	232		남해군		남해군	
17	창선면 진동리	658	전	1825	263		남해군		남해군	
18	창선면 진동리	661	전	621	170		남해군		남해군	
19	창선면 진동리	663	전	621	28		남해군		남해군	
20	창선면 진동리	664	전	1950	295		남해군		남해군	
21	창선면 진동리	665	전	783	403		남해군		남해군	
22	창선면 진동리	666	전	1521	291		남해군		남해군	
23	창선면 진동리	667	전	1937	618		남해군		남해군	
24	창선면 진동리	669	전	1745	163		남해군		남해군	
25	창선면 진동리	673	전	852	100		남해군		남해군	
26	창선면 진동리	674	전	466	26		남해군		남해군	
27	창선면 진동리	661-1	전	57	14		남해군		남해군	
	합계			-	6,295	_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9 -566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7일

남 해 군 수

- 1. 출입토지의 내용
 - 공 사 명 :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출입구간 :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270번지외 21필지
- 2. 출입기간 : 2019. 4. 17.~ 사업 종료시까지
- 3.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안전총괄과장)
- 4. 공사계획의 내용 및 출입토지조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안전총괄과 (☎055-860-329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편입용지조서 1부. 끝.

	Ī	^																							
		상	이상이	김도0 외 2인	8 8 8	정돈0	정군0	강호0	정신0	정대0	정시0	국(국토교통부)	정말0	정시0	정차0	정차0	정성0	정성0	정용0	정 80	정시0	김정0	신순0	이규0 외 1인	
	유	巜	백양그린아파트206-1008	.1 26	석평리 489	2525번길 73-3	41	길 51-17	14-31	1 26	양아로525번길 73-7		양아리 1323	양아로525번길 73-7	양아리 1317	양아리 1317			남해읍 아산리 970-1 남양아파트 7는501	보수대로 41-15(토성동17ト)	양아로525번길 73-7	주공아파트 105동502호	상주면 양아로362번길 177	문장로22길 20, 108동 1103호(원호정보타운)	
조	서	Kŀ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552 백양그린아파트206-1008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26	경남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로525번길	부산 서구 서대신동2가 444	경남 사천시 정동면 동계2길	부산 영도구 신선동3가 104-31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26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르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르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			경남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97	부산광역시 서구 보수대로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르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65 주공아파트 105동502호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트	경북 구미시 고아읍 문장로22길 20,	
<u>o</u> I	적 (m²)	미	389	634	345	199	52	630	176	1,624	215	267	14	177	235	805	52	574	130	248	2,264	1,205	2,858 3	154	13.247
팄	지적	총지적	3,471	3,471	893	840	225	2,661	798	3,967	215	638	122	1,540	14,678	1,101	109	1,157	1,134	737	9,684	7,306	12,297	17,785	84 829
7	마	현 개													-								2	2	
护	K	전	<u></u> 00	<u></u>	전	전	전	<u>0</u> 0	<u></u>	<u>0</u>	전	Щ	전	전	<u>0</u> 0	전	<u></u>	전	전	전	<u>50</u>	<u></u>	<u>50</u>	<u>50</u>	
10	뫼	K				-		2	က												-	5	9	-	
	K	퍼	산269	산270	1276	1277	1272	산267	산267	산271	1269	1978	1266	1264	산272	1256	1255	1257	1261	1263	산266	산265	산265	산265	
	K	리	1018	"	"	"	"	"	"	"	"	"	"	"	"	"	"	"	"	"	"	"	"	"	
	소	田	사	"	"	"	"	"	"	"	"	W.	"	"	"	"	n.	"	"	"	"	"	"	"	
	토지	巾	元	"	"	"	"	"	"	"	"	"	"	"	"	"	"	"	"	"	"	"	"	"	
	اب E] 어	-	2	3	4	2	9	7	8	6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丙

남해군 공고 제2019 - 601호

『아산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아산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시행에 따른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30일

남 해 군 수

-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19. 1. 1. ~ 2021. 12. 31.

사업의 종류	사업예정지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및 명칭(사업명)	(위치)		명칭 및 주소
아산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남해읍 아산리 산144-5번지 일원	·사면정비 L=262m, H=20m	남해군청/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2. 열람장소, 열람기간

열람장소 : 경상남도 남해군청 안전총괄과열람기간 : 2019. 4. 30.~2019. 5. 15.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19. 4. 30.~2019. 5. 15.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방재복구팀(☎055-860-3293, 055-860-32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19-602호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4월 25일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2. 개정이유

생활문화센터의 사용기준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1시간으로 개정하고 사용료 일부를 감면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용료 부담을 경감코자 함

3. 주요내용

○ [별표 1]의 사용 기준 시간을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변경하고 사용료 일부 경감 가. 개정 전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오전	20,000	1. 사용기준시간
다목적실	오후	20,000	○ 오전 : 10:00 ~ 13:00(3시간) ○ 오후 : 14:00 ~ 17:00(3시간)
	야간	30,000	○ 야간 : 18:00 ~ 21:00(3시간)
동호회실,	오전	3,000	2. 가산요율
전시실,	오후	3,000	○ 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 50% 가산 ○ 냉·난방사용 시 50% 가산
악기연습실	야간	5,000	3. 사용료는 부가가치세(10%) 미포함 금액임

나. 개정 후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사용기준	사용료 (1시간)	비 고
다목적실	주간	7,000	1. 사용기준시간 ○ 주간: 09:00 ~ 18:00
7772	야간	10,000	○ 야간 : 18:00 ~ 21:00
동호회실,	주간	1,000	2. 가산요율
악기연습실	야간	1,500	○ 냉·난방사용 시 50% 가산
전시실	1일	무료	3. 사용료는 부가가치세(10%) 미포함 금액임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9년 5월 16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문화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⑤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문화청소년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8626, 팩스 055-860-3750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문화청소년과 문화예술팀(전화 055-860-86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생활문화센터 사용료(제8조 관련)

1. 사용료(다목적실, 동호회실, 전시실, 악기연습실)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사용기준	사용료 (1시간)	비고
다목적실	주간	7,000	1. 사용기준시간 ○ 주간: 09:00 ~ 18:00
시기기원	야간	10,000	○ 야간 : 18:00 ~ 21:00
동호회실,	주간	1,000	2. 가산요율
악기연습실	야간	1,500	○ 냉·난방사용 시 50% 가산
전시실	1일	무료	3. 사용료는 부가가치세(10%) 미포함 금액임

2. 사용료 반환(다목적실, 동호회실, 전시실, 악기연습실)

	반 환 기 준	
운영자의 책임있는 귀책사유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되지 못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
사용자의	1. 사용일 1일전 취소신청을 한 경우	전액 반환
책임있는 귀책사유	2. 사용일 당일 취소신청을 한 경우	반환하지 아니함

[참고-개정 전]

[별표 1]

생활문화센터 사용료(제8조 관련)

1. 사용료(다목적실, 동호회실, 전시실, 악기연습실)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사용기준	사용료	비고				
	오전	20,000	1. 사용기준시간 ○ 오전 : 10:00 ~ 13:00(3시간)				
다목적실	오후	20,000	○ 오후 : 14:00 ~ 17:00(3시간)				
	야간	30,000	○ 야간 : 18:00 ~ 21:00(3시간)				
동호회실,	오전	3,000	2. 가산요율				
전시실,	오후	3,000	○ 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 50% 가산 ○ 냉·난방사용 시 50% 가산				
악기연습실	야간	5,000	3. 사용료는 부가가치세(10%) 미포함 금액임				

2. 사용료 반환(다목적실, 동호회실, 전시실, 악기연습실)

	반 환 기 준	
운영자의 책임있는 귀책사유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되지 못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
사용자의	1. 사용일 1일전 취소신청을 한 경우	전액 반환
책임있는 귀책사유	2. 사용일 당일 취소신청을 한 경우	반환하지 아니함

남해군 공고 제 2019 - 603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아산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0일

남 해 군 수

- 1. 출입토지의 내용
 - 공 사 명 : 아산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출입구간 :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산144-5번지 외 17필지
- 2. 출입기간 : 2019. 4. 30.~ 사업 종료시까지
- 3.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안전총괄과장)
- 4. 공사계획의 내용 및 출입토지조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안전총괄과 (☎055-860-3293, 055-860-32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편입용지조서 1부. 끝.

면입용지점석

					1															
[-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 류 , 내 용												가압류							
계 인	수												합중앙회 외 7							
뉴	어 명 8												농협협동조							
유자	수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북변동 569	남 해 군	한국농어촌공사	무 애 구	무해무	북변리 298-7	남 해 군	남 해 군	북변리 284-7	촉석로27번길 7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현대APT102-1803	북변동 484	무 해 구	
서	성명	노	ŀТ	тr	김선생	тr	논	rŀг	т.	8부0	뇬	노	원경0	전윤0 외 1	논	논	박주0	김희0	ιΉ	
되 지 장 다	(m)	362	107	370	307	4	89	198	17	102	102	1,897	75	2,975	4,794	684	2,020	89	23	14 815
마	(m²)	362	3,471	370	307	4	89	198	17	102	102	1,897	1,105	20,459	4,794	684	5,379	89	23	40.052
머	누	0⊨	0⊨	⊨٥	버	占	ᠴ	버	古	전	五	그	전	미	바	ᆄ	<u></u>	工	그	
지번	(편입)	산 144-4	산 144-1	211-3	211-2	209-7	산 146-4	산 146-1	210-1	210	209–5	204-1	209-3	산 144-5	산 144-16	산 146-3	산 146-2	205-2	205-4	
	딢	아산	아산	아산	아산	아산	아산	아산	아산	아산	아산	아산	아산	아산	아산	아산	아산	아산	아산	
소재지	O I	다 하	亞	亦	亦	亦	正	乖	二	二	严	다 매	乖	다 하	다 매	다 매	마매	먀	乖	
	권	다	乖	乖	乖	乖	乖	売	売	먇쾖	乖	남해	乖	무해	무해	남해	무해	亦	売	
의 면	H 어	-	2	က	4	5	9	7	8	6	10	11	12	13	14	15	16	17	18	丙

남해군 공고 제 2019 - 618호

공시송달 공고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시행에 따른 사업인정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협의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사업인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30일

남 해 군 수

1. 사업개요

1) 사업 명칭 :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2) 사업 목적 :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3)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경상남도 남해군수

나.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

4) 사업 시행 위치 및 규모

가. 위 치 :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270번지 일원

나. 사업내용 : 사면정비 L=728m

2. 의견 제출 기간 및 장소

1) 의견 제출기간 : 2019. 4. 30. ~ 5. 14. (14일간)

2) 의견 제출 장소 :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055-860-3293,4)

3. 공시송달 대상자

				면 적	소 유 자 현 황					
번	토 지	지 번	지	(m²)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호	소재지		목	지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 -	
계						4인				
1	상주면 양아리	산267-2	임	2,661	경남 사천시 정동면 동계2길 51-17	강효0				
2	상주면 앙아리	산265-1	임	17,785	경북 구미시 고아읍 문장로22길 20, 108동 1103호 원호정보타운	이규0				
3	상주면 양아리	1272	전	225	부산 서구 서대신동2가 444	정군0				
4	상주면 양아리	산270	임	3,471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로 533번길 46	손홍0(김세0)				